

HiT글로벌러닝센터 운영규정

2025. 08. 01. 최초제정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대전보건대학교 글로벌대학사업 운영규정에 의거 글로벌사업단에 소속된 HiT글로벌러닝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이 규정은 센터의 조직과 운영 전반에 대해서 적용한다.

제3조(사업기간) 센터의 사업기간은 약정서에 명시된 기간으로 한다.

제2장 조직 및 업무

제4조(조직) ①센터에는 센터장을 두며, 센터장은 본 대학의 재직 중인 전임교원으로 한다.

②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여 센터 업무 전반을 통할한다.

③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팀원을 둘 수 있으며 팀원은 센터의 사업 관련 교직원으로 하고 총장이 위촉한다.

제5조(업무) 센터는 다음의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특화 사업 관련 전략 수립, 구성, 평가 등에 관한 사항
2. 실행계획서에 따른 연간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, 점검에 관한 사항
3. 현장미리형 HiT글로벌러닝센터 구축, 운영 및 점검에 관한 사항
4. 현장 미리형 융합실습모델 개발, 운영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
5. 보건의료기술 러닝센터 순환교육 운영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
6. 현장 미리형 교육모델 표준화, 공유·확산 등에 관한 사항
7. 그 밖에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

제3장 위원회

제6조(운영위원회)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HiT글로벌러닝센터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제7조(구성)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 내외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글로벌사업단장이 되며 위원회를 총괄한다.

②당연직 위원은 HiT글로벌러닝센터장으로 하고 임명직위원은 대학교원 또는 센터 운영사업 관련 산업체인사 중에서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

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, 간사는 HiT글로벌러닝센터 직원으로

한다.

제8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.

1.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2. 사업추진 실적의 평가 및 점검에 관한 사항
3. 센터의 제반 사업운영의 자문에 관한 사항
4. 기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주요 사항

제9조(회의 소집 및 의사결정)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및 전체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회의는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회의에서 결정된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4장 재정 및 기타

제10조(재정) ①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.

1.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
2. 기타 지원금

②재정 관련 제반사항은 주관기관의 사업비 집행관리 및 운영지침과 산학협력단 회계 처리 규칙에 따른다.

제11조(규정 외 사항 처리)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주관기관의 운영규정과 대학의 관련 지침 등을 따른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조치) 이 규정의 시행이전에 시행된 센터 관련 사항은 이 규정에 의거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.